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미준수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관)는 2000. 12. 20. 「강원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운영하면서, 2010. 12. 20.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을 기록관에 배치하고, 2016년 9월 감사일 현재 ○○○○관 ○○○○담당(팀)의 현원이 13명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다.

강원도 기록관은 2016년 현재 8만여권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고, 매년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평가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물 이관 시 기록물건 단위의 공개여부 적정부여 여부를 판단하고, 기록관 소장 전자·비전자

기록물의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당 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기록관리기준표의 수립·운영, 기록물 보존서고의 운영 및 DB구축, 해당 기관의 처리과 및 소속 기관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업무,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최소 3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나, 2010년 1명을 배치한 이후 충원하지 않은 채 기록관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 전체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 기록물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